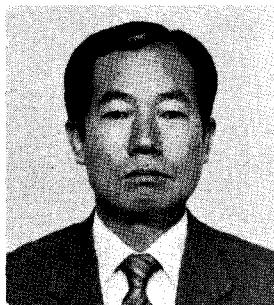


企業의 發明家 育成

—經驗을 토대로한
統計와 事例中心—



全吉鎭
〈本會 調查資料部長〉

1. 概論

우리나라는 헌법 제22조 2항에서 “發明家의 권리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문화 되어있고, 이에따라 特許法 제44조에서도 特許權은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發明家의 광의의 표현인 개인발명인과 기업에 종사하는 職務發明人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종사하는 職務發明人에 대해서는 特許法 제17조와 18조에서 각각 職務發明과 職務發明에 대한 보상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發明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발전에 根幹이 되고 있음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통계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이웃나라 日本과 비교하면 너무나 격차가 큰 것이 아쉽다.

전세계적 年間 特許出願 1백40만건중 일본은 41%에 해당하는 34만건을 出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만여건에 불과하다. 2만여건의 出願도 日本이 우리나라에 出願하는 6천여건을 포함한 외국인出願 1만4천3백건(72%)을 제외하고 나면 고작 28%에 해당하는 5천7백여건에 불과하다.

또한 特許發明의 실시는 기술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용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發明보다는 기업에서 研究開發한 職務發明의 실시가 용이하다.

우리나라 特許出願에 대한 법인(기업)과 개인의 비율은 1983년도에 법인이 30%이고 개인이 70%를 점유하였으나, 1988년도에는 법인이 70%이고 개인이 30%로서 추세의 급격한 변동이 생긴것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설치한 기업이 증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현재 5백26개 기업에 1천4백여명의 特許管理 要員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特許廳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本稿에서 日本의 기업이 職務發明 奨勵를 위한 제도시행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험적 사례를 고찰 함으로써 기업의 特許管理와 職務發明 유도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코자 한다.

2. 職務發明과 提案制度

職務發明制度는 종업원의 發明에 대한 보상제도로 기업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채택된 제도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기업의 發明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日本 發明研究所가 조사한 2백20개 기업체와 23개 研究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설문결과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나타낸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에 發明者가 되기 위한 기술요원의 훈련을 위해서는 항상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創造的技術은 이러한 훈련에 절차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이며 최근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研究되고 실시되어 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방법은 개발된 기술을 發明으로 이루어지게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술자에게는 “흥미”를 유발하고 관리자에게는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의미에서는 기술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創出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준비된 요구사

항일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직화 되고 科學的인 방법이 취해져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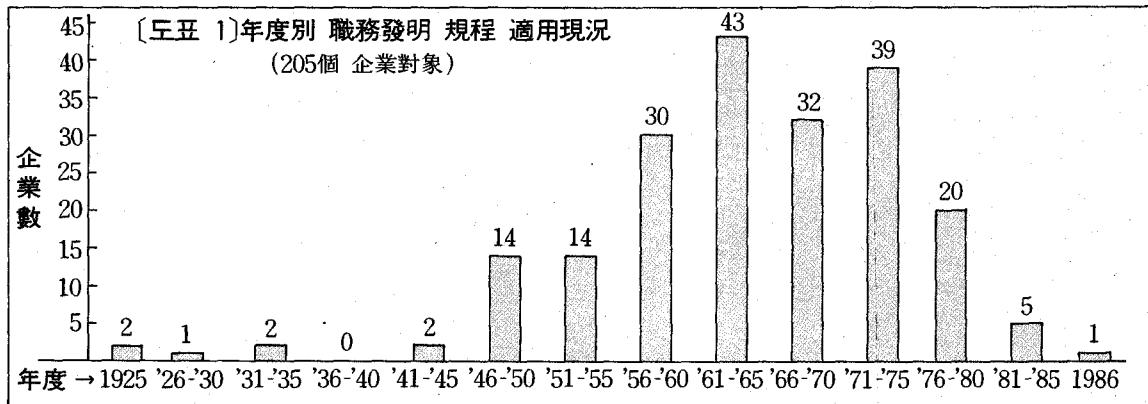
提案制度나 다른말로 표현해서 “O and M(Organization and Method)시스템이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수단이다. 현재 日本의 대다수 기업과 研究所들이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職務發明 制度와 연구 위원회를 편성하여 기술개발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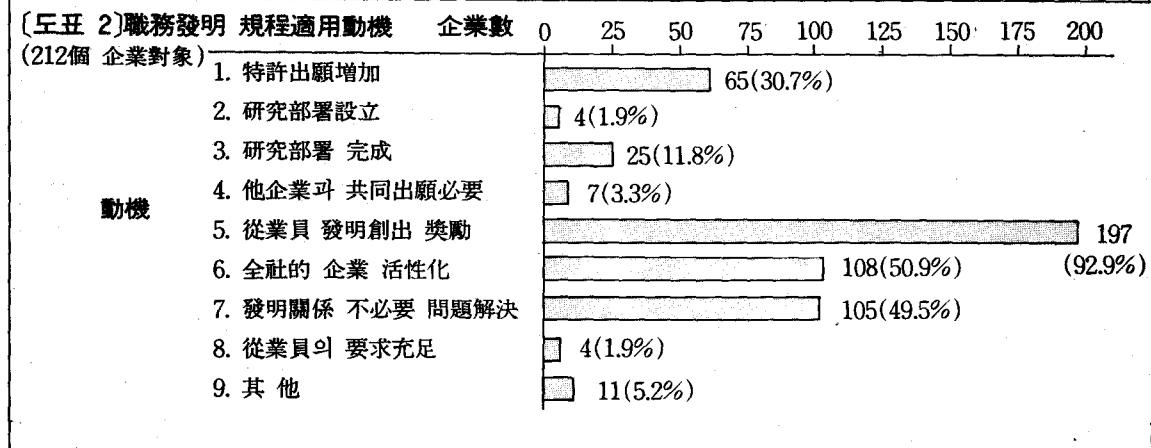
提案制度의 채택 및 발전과 더불어 생겨난 職務發明 制度가 함께 운영되고 발전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提案制度는 1880년 스코틀랜드의 Denny Dockyard(William Denny, Shipbuilder)사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믿어지며 노동관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후자에 속하는 기술개발 장려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職務發明 制度 채택

상기 설문조사의 결과 1979년도에 日本기업은 職務發明制度를 채택한 기업이 73%였으나 근래에는 96%에 해당하는 기업이 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도표1]은 年度別 職務發明制度를 채택한 현황이다. 1960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日本特許法이 職務發明 규정을 채택하고 기술개발이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활발해진 이유를 들수있다.





[도표2]는 응답기업의 92.9%가 職務發明 규정 적용의 동기를 종업원의 發明創出을 장려하기 위하여 職務發明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응답한 것은 日本의 기업들이 職務發明 制度를 종업원의 發明獎勵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정착시켜온 실례로 나타나 있다.

점차적으로 중소기업들도 연구개발활동에 큰 관심을 기우려왔음이 명백하다.

4. 職務發明制度의 효과

職務發明制度의 효과는 종업원의 발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성취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고무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特許管理에 있어서 發明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發明考案의 創出이나 독점권의 행사의 범위와 發明의 실시로 얻어진 기술적 가치 평가는 特許出願, 審查請求, 登錄과 기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전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계속 평가되어야 한다.

아래 도표에서 職務發明 制度의 효과와 평가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5. 從業員 보상제도

기업의 職務發明補償制度 적용여부에 대한 최근 연구조사결과 2백13개 기업중 72%에 해당하는 1백55개 기업이 보상제도를 실시하

고 있으며 27.3%에 해당하는 58개기업이 補償制度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 6]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職務發明 보상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경제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평가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補償制度에 대한 효과를 묻는 설문 결과는 1백51개 기업중 75.5%에 해당하는 1백14개 기업의 종업원이 그들의 創意力과 명예심이 고취되었으며 55%에 해당하는 83개 기업은 發明者는 물론 타 종업원에게까지도 補償制度가 효과적인 자극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55.6%에 해당하는 84개 기업은 기업전체의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같이 補償制度의 실시는 기업전체의 발명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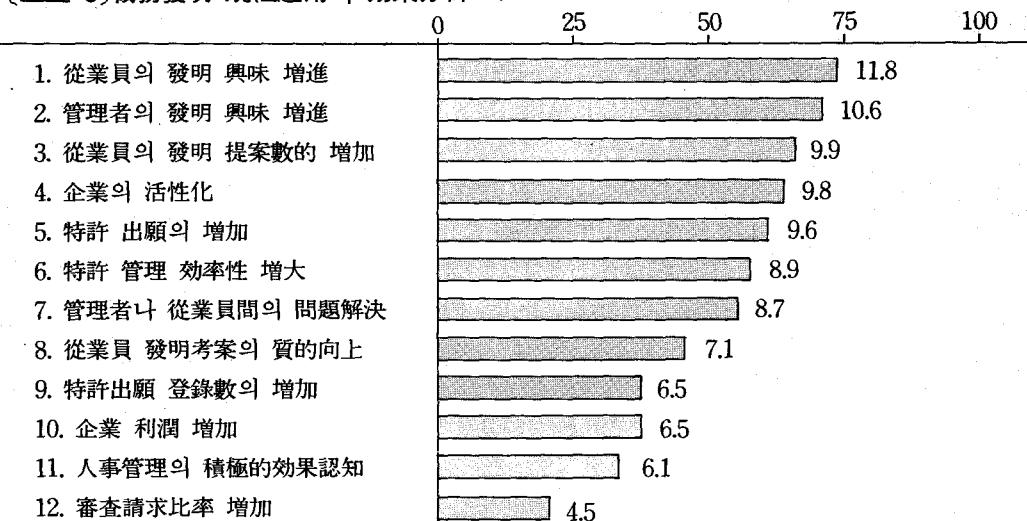
補償制度는 개인기업에서도 예외가 될수는 없다. 發明者나 기업주는 정부나 인가된 기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더이상의 명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명예심이 관리자나 중역뿐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고무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6. 結言

우리나라도 1982년이후 계속적으로 發明獎勵事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표 3) 職務發明 規程適用의 効果分析 (207個 企業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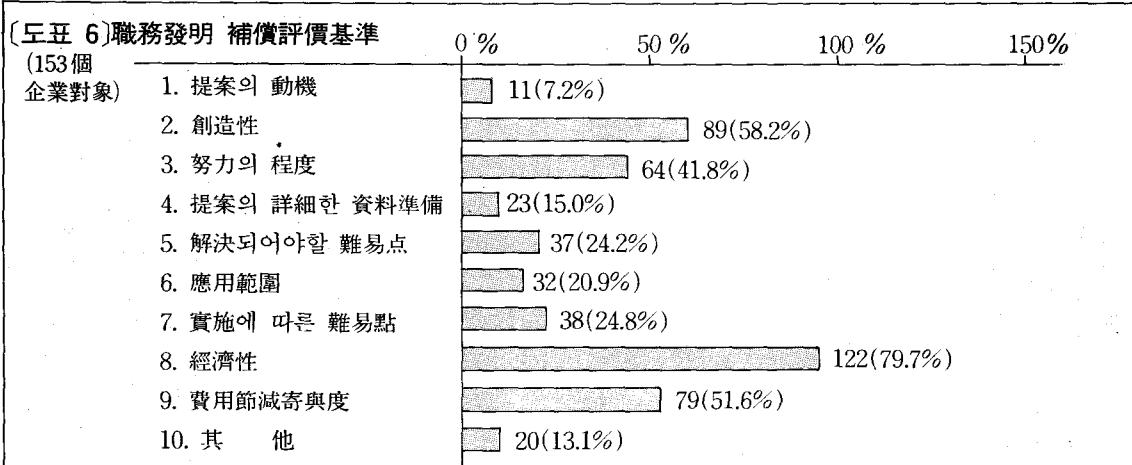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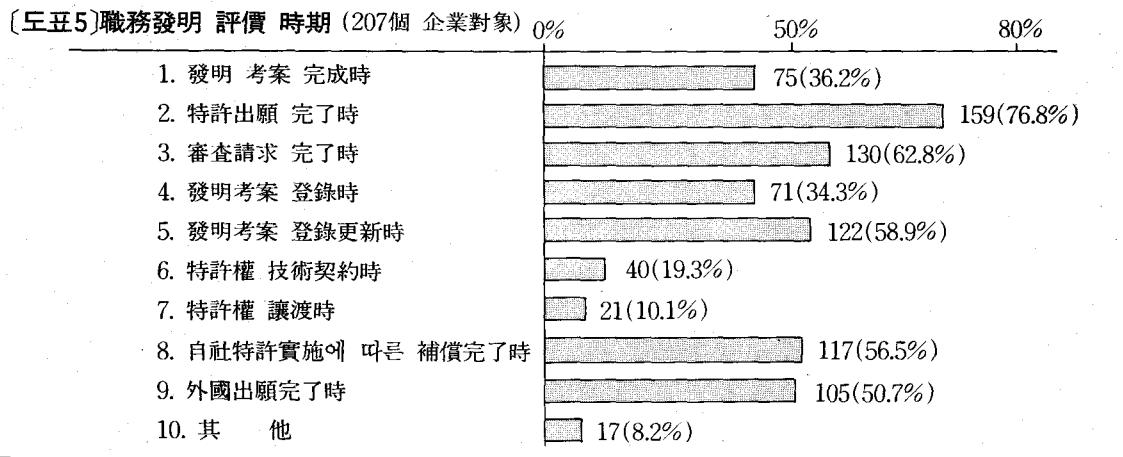
(도표 4) 發明考案 評價考慮要素

評價項目	比率 (%)	評價項目	比率 (%)
1. 發明, 考案의 動機	0.95	11. 聯關技術分野의 難易度 및 解決되어야 할 문제	1.30
2. 發明의 新規性 및 進歩性	20.74	12. 實施에 따른 技術的 價值	12.52
3. 獨占權利의 範圍	15.53	13. 發明 實施의 難易度	6.57
4. 發明者의 努力의 程度	0.97	14. 類似製品과의 權利 相計性	3.42
5. 發明家 職位에 따른 職務評價	0.29	15. 廣告効果	1.23
6. 自社確保技術과의 連繫性	5.23	16. 豐想 利益金	7.32
7. 互換性 技術 有無	4.25	17. 企業投資所要(人員, 費用)	0.90
8. 發明 技術의 影響力	2.50	18. 發明技術의 壽命年限	3.34
9. 既存의 技術利用範圍	0.68	19. 生產費用節減 効果	2.75
10. 他社 技術이 미치는 效果	8.33	20. 其他	1.18
총 계			100

특히 發明有功者나 기업의 職務發明者와 우수 個人發明家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별국민적인 發明思想 양양으로 發明을 生活화하는 全國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특히 기업에 경영주는 하루빨리 特許管理 部署를 활성화 하여 기업의 기술경

쟁력과 生産性 재고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관리자나 종업원은 기업과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職務發明에 진력하여 타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對外競爭力を 높여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우리나라 기업체질을 改善해 나아가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WIPO발간(89. 3월) Symposium on Creativity and the Promotion of Inventive Activities.

案 外國出願費用 補助金 申請 内

다음과 같이 '89年度 外國出願費用 補助業務를 案내하오니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申請期間 : 1989. 10. 1 ~ 10. 31
- ◎ 申請對象 : 1988. 10. 1 ~ 89. 9. 30일 사이에 外國出願費用 送金사실이 있는 外國出願 發明·考案
- ◎ 補助金 交付基準

▲ 補助金 交付는 申請人 1人에 對하여 5件範圍內에서 1件當 40만원(단, 外國出願費用이 80만원 미만일 경우 그 費用의 50%를 交付함)

▲ 補助金은 個人, 中小企業 순위로 交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協會 發明振興部(557-1088 · 568-8267)로 問議바랍니다.